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합361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5. 2 선고 2024나200345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합36189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지윤

변론종결 2023. 8. 31.

판결선고 2023. 12. 1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9. 2. 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D에게, 피고 B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위 각 부동산 중 3/14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4. 11. 25.경 '2,000만 원정, 위의 금원을 채무자(D)에게 채권자(E)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D이 E에게 이자 월 2.5%와 원금을 2014. 11. 25.부터 2015. 1. 25.까지 지불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입금증서(이하 '이 사건 입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나. E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384608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31. 위 법원으로부터『피고(D)는 원고(E)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5. 9. 17. 확정되었다.

다. E은 2019. 12. 30. 원고에게 소외 D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E을 대리하여 2022. 4. 13. D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C과 D의 부친이자 피고 B의 배우자인 F은 2018. 10. 3. 사망하였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은 피고들과 소외 D이 있었고, 상속분은 피고 B 3/7, 피고 C, 소외 D 각 2/7이다.

마.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1/2씩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9. 2.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D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D의 법정상속분인 2/7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D에게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경료한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부

살피건대, 대여금청구를 위하여는 소비대차로 인하여 금원이 수수되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이 2014. 11. 25.경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D이 본인 명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G에게 시행 및 시공을 맡겼는데, E은 G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기존 대여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입금증서 등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이 E에게 이 사건 입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입금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E 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입금증서에는 "D에게 E이 입금한 것에 대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어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만으로 D이 G의 E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을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E이 D에 대한 보증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으로부터 위 보증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송효섭, 판사 임현수

별지